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
----------	-----

제안년월일 : 1992년 11월 28일

제안자 : 이병우의원의외 9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사의 가용재원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되며,
- 잠정적인 기금조성 목표액을 5년간에 50억으로 하고 있는데 본도의 금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추계를 200억 내외가 된다고 볼때
- 전입금 10% 이상으로 하지 않고 6% 선으로 하향 조정하여도 기간내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코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세입 수입금중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 6% 이상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 (세입, 세출)</p> <p>① -----</p> <p>1.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u>10% 이상</u>)</p> <p>2. -----</p> <p>3. -----</p> <p>4. -----</p>	<p>제11조 (세입, 세출)</p> <p>① -----</p> <p>1. ----- (----- ----- <u>6% 이상</u>)</p> <p>2. -----</p> <p>3. -----</p> <p>4. -----</p>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이 있는자로 4H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와 기타 영농에 성실히 앞장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개발기금"이라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농촌소득 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개발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기금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발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개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기금 운영심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대상자 선정
3. 기타 경미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① 개발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 운영계획은 다음 각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년도 개발기금 사용계획
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 사업
- ②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
- ③ 기타 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5조의 관한 사업비 용자를 받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 의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지원은 용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② 용자금(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용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원금이자는 년 3%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9조(용자금의 회수) ① 시장, 군수는 용자금을 받은 자가 용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용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기금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업무는 농어촌개발국에서 관장한다.

제11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 )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용자금의 상환금 및 운영수입금

4. 기타 잠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지출한다.

③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경우 분임징수관은 농어촌 개발과장 수입금 출납원은 농정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농어촌개발국장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용자(보조)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하고 지도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